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2호 2011년 6월 pp.317~349
한국세무학회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천웅** · 김원배***

<요 약>

현행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대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 방식에 따라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압축기장방식에 의한 과세이연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논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회계 선택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적격 분할과 비적격 분할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중 “양도차익을 손급에 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할로 양도되는 순자산의 시가와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다르므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통칙 52-88...3에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순자산의 시가로 물적분할하고 분할대가를 100% 주식으로 받는 경우로서 순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셋째,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상 순자산의 취득가액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자산의 세목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의 부속명세서로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연구에는 2011학년도 경원대학교의 학술연구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미비점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무법인 가교 대표세무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kwcpta@hanmail.net, 011-351-1933, 주저자

*** 경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wbkim@kyungwon.ac.kr, 031-750-5222, 교신저자

넷째,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양도시까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의 과세이연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되되, 제3항을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물적분할, 과세이연, 자산조정계정, 취득가액, 압축기장

I. 서 론

1997년 IMF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의 기업환경 속에서 고도성장에 따른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정부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5417호 1997.12.13)으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많은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5581호 1998.12.28)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5584호, 1998.12.28)으로 법인분할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신설하였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은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2009.12.31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9898호) 시 대폭 개편되었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개정과 더불어 2010.6.8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2220호)으로 대폭 개편되어 2010.7.1부터 현재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¹⁾

현행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압축기장방식에 의해 과세이연을 하지만, 이로 말미암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현행의 과세제도는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에 불구하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에서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빼서 산출한다.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0이 된다. 그런데 압축기장방식에 의한 과세이연은 일단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그 금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인데 양도차익이 0이 되어 과세이연의 대상이 없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법 제47조 제2항에서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1) 본 논문에서 법인세법은 “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기본통칙”으로 표현한다.

제72조 제2항 제3호 역시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 시가로 자산을 양도·양수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양수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로 양수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이중과세 또는 손실의 이중공제 문제가 발생한다.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한 조문은 없다. 다만,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에서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현행 세법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일반적인 자산양도와 같이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되,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분할법인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이나 자산의 처분 시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산조정계정”²⁾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정의도 없어 법 문언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2010.7.1부터 시행되는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은 해석에서의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회계 선택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적격 분할과 비적격 분할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과세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제Ⅲ장에서 물적분할에 대한 현행 규정의 해석에 대해 검토하고, 제Ⅳ장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규명한다. 제Ⅴ장에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Ⅵ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상법에서의 물적분할

가. 물적분할의 의미

회사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고, 분할되는 회사 재산의

2) “자산조정계정”은 차용개념이 아닌 고유개념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가 이를 넘겨받는 수 개의 회사로 포괄 승계되고, 재산을 넘겨받는 회사가 그 반대급부로 지분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을 승계하는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인적분할이라 하고, 주식을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아닌 분할법인이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물적분할의 배경이 되는 법률은 상법이다. 상법 제530조의12에서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물적분할의 배경이 된다. 이러한 물적분할은 기업집단을 형성하거나 지주회사를 만드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나. 물적분할의 주요 내용

(1) 물적분할의 대상

물적분할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개개의 재산(권리의무)일지라도 분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단위로만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러한 논의는 개별자산의 양도를 물적분할의 형태로 바꿈으로써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상법에서 영업 단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영업 대신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특히 법인세법에서 특례의 조건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분할하는 경우’라고 표현함으로써³⁾ 영업 단위가 아닌 개개의 재산단위로도 분할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권기범 2009, 8).

(2) 채무초과 재산의 분할가능 여부

상법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물적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채무초과자산만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설립무효 내지 분할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권기범 2009, 10). 이때의 채무초과자산이란 분할로 이전되는 부채의 공정가액이 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물적분할에 대한 회계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2010.12.30 공표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32.14에서 물적분할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정가치에

3)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시행령 82조의2)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분할법인인은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일반적인 제삼자와의 거래와 같이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분할신설법인 역시 이전받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한다.⁴⁾ 예를 들어 장부가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110원인 순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액면가액 80원인 주식을 발행한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처리는 각각 다음과 같이 된다.⁵⁾

분할법인 회계				분할신설법인 회계			
Dr		Cr		Dr		Cr	
투 자 주 식	110	순 자 산	100	순 자 산	110	자 본 금	80
		처분손익	10			자본잉여금	30
지분법손익	10	투자주식	10				

나. 물적분할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

회계기준위원회(KASB)에 의하면 물적분할은 같은 경제적 실체에 있던 사업부를 별도의 법적 실체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감소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게 된다면 자산·부채에 대한 재평가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동일 지배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고, 현행의 회계기준을 유지한다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원칙을 고려하여 물적분할에 대해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하도록 결정하였다(문단 결32.21-22). 그러나 물적분할의 경우 개별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시에는 분할시점의 처분손익이 제거된다.⁶⁾

정태범·이석준(2006, 158)에 의하면 물적분할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⁷⁾은 물적분할이 현물출자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가 타당하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그 본질이 다르고, 연결재무제표의 관점에서 보면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처분손익이 제거됨으로써 장부가액에 의한 물적분할과 같은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4)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49-55]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으나 2010.12.3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의 공표와 함께 해석[49-55]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32.14-16으로 대체되었다.

5)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사례 IV-1에서 인용하였음.

6)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1-149, 2001.11.16외 다수

7) 본 논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전의 해석[49-55]에 대한 것이지만, 공정가치에 의한 회계처리라는 점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실질내용이 동일하므로 여전히 유효한 논의로 볼 수 있다.

3. 2010.7.1 이전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제도

분할법인에 대해서는 물적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나 특례요건⁸⁾을 갖추었을 때는 분할로 말미암아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즉,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요약하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시점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승계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⁹⁾ 즉, 시가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순자산의 시가 이하의 가액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¹⁰⁾ 또한 물적분할의 경제적 실질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를 갖고 있어, 시가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조세부담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시가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 즉, 분할평가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서광석 2010, 100).

4. 선행연구

2010.6.8 개정된 법률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황남석의 박사학위논문이 있다. 물론 이전의 물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모두 개정 전의 법과 관련되어 있다. 황남석(2010.8)에 의하면 2010.6.8 개정된 법률에서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회사는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로 양도하고 양수회사도 시가로 승계하지만, 해당 자산의 취득가

8) 법 제47조 제1항 및 제46조 제1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82조 제3항(2010.6.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특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9)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단,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2010.6.8 대통령령 제22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기본통칙 47-83-1).

액을 양도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은 일관성 없고 모순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모순은 양도회사 단계에서의 장부가액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대가를 시가로 계산하여 일단 양도차익을 발생시킨 후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는 방식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인적분할과 같이 과세이연방법을 장부가액 승계방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III. 물적분할에 대한 현행 규정

1. 물적분할 관련 규정

법인세법은 인적분할에 대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과세방법과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분할법인에 대해서는 분할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또한,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함과 동시에¹²⁾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인적분할의 경우와 달리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양도를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¹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법인이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은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양수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¹⁵⁾

11) 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82조

12) 법 제46조의2 및 시행령 제82조의2

13) 법 제46조의3 및 시행령 제82조의3

14) 과세특례 해당요건(법 제46조 제2항)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15) 분할법인이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있지만, 이 규정 역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와 같다.

2. 분할법인에 대한 규정

가. 자산의 양도차익

물적분할을 하면 분할법인은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분할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고, 분할법인이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산의 교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법 제50조와 시행령 제86조 제4항, 판례,¹⁶⁾ 행정해석¹⁷⁾을 보면, 교환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에서 교환으로 양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적분할은 자산을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일종의 교환거래이므로 자산의 양도가액은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된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된다.¹⁸⁾

나. 주식의 취득가액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한다.¹⁹⁾ 행정해석에서도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²⁰⁾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에서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한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문에서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즉,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때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이란 양도가액을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손익을 이연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주식의 취

16) 서울고등법원2008누8422, 2008.10.30

17) 서면2팁-2385, 2004.11.18외 다수

18) 서광석(2010, 94) 역시 “자산양도차익=주식취득가액-이전자산의 장부가액(자산-부채)”로 표현하고 있다.

19)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

20) 법인-296, 2010.3.26 외 다수

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압축기장방식으로 과세이연을 하면서 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은 모순된 규정으로 보인다. 인적분할에서는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적분할에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면 인적분할의 경우와 같이 장부가액승계방식에 의한 과세이연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된 입법은 압축기장방식에 따른 과세이연제도를 취하면서 그 효과는 장부가액 승계방식과 같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장부가액 승계방식인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자산의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여지가 없지만, 현행의 과세체계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에서는 양도차익의 산출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분할법인은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어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순자산의 양도차익이 되고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110원인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액면가액이 80원인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았다면 기업회계는 다음과 같이 되고 양도가액인 투자주식의 가액과 양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은 동일하게 110원이 된다.²¹⁾

분할법인 회계				분할신설법인 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110	순 자 산	100	순 자 산	110	자 본 금	80
		처분손익	10			자본잉여금	30

이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세무회계에서는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기업회계에서는 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²²⁾ 즉, 물적분할로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이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양도되는

2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사례Ⅳ-1을 인용하였음.

22)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1

자산의 시가보다 작은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는 의미와 같다. 분할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이고, 물적분할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액은 없으므로, 주식의 시가는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³⁾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평가방법의 상이로 말미암아 주식의 시가와 양도되는 자산의 시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다. 즉, 자산은 그 자체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평가되지만, 비상장주식은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됨으로써 주식의 시가와 자산의 시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다.²⁴⁾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양도하는 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취득하는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를 보자. 즉, 앞의 사례에서 주식의 평가액이 80원인 경우 분할법인은 시가가 110원인 자산을 80원에 양도하여 30원의 이익을 분할신설법인에 나누어 준 후, 평가액이 80원인 주식을 110원으로 계상함으로써 30원의 가공이익이 계상되었다. 물론 분할시점에는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이 같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원의 가공이익은 주식을 시가인 80원에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30원과 상계되므로, 결과적으로 외형상의 변동 없이 분할신설법인에게 30원의 이익을 나누어 준 것이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3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할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물적분할을 하였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자산의 공정가치로 양도하였으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양도한 순자산과 동일한 평가액이 되는 주식을 받았으므로, 경제적 실질로 보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분할법인이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양도가액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있다. 따라서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²⁵⁾ 그러나 이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즉, 고가의 순자산을 물적분할로 양도하고 상대적으로 저가 평가되는 주식을 받아 동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증여의 우회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과세이연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23) 법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24)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 제과-1065, 2009.6.15). 따라서 분할 전 법인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분할시점에서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된다. 여기서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란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지,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를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과세특례의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25) 동일한 과세체계를 갖고 있는 현물출자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물출자된 자산의 시가에 미달하면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윤병철 2005, 12).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데 이때의 양도차익에 주식의 시가가 순자산의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앞의 사례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양도차익 30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규정

가. 자산의 취득가액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인적분할의 경우와 달리²⁶⁾ 비적격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서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순자산가액을 주식발행초과금,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순자산가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110원인 순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액면가액 80원의 주식을 분할법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의 기업회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

기업회계			
Dr		Cr	
순 자산	110	자 본 금	80
		주식발행초과금	30

이 경우 주식발행초과금 30원 중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10원을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즉, 익금불산입되는 상법상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볼 것인지, 익금불산입되는 분할차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할매수차익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²⁷⁾ 상법에서는 분할신설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본다.²⁸⁾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자본

26)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비적격분할(법 제46조의2)과 적격분할(법 제46조의3)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7) 현물출자의 경우 자산을 시가로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법 제17조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한다(법인22601-227, 1986.1.24).

준비금을 분할차익으로 규정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있다.²⁹⁾ 2009.12.31 법률의 개정 전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분할차익을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면서 분할평가차익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제외 규정이 삭제되고, 법 제46조의2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분할법인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분할매수차익으로 계상하되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0.12.30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인적분할을 하는 때에만 법 제46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물적분할을 하는 때에 생길 수 있는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매수차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없어졌다. 일반적으로 주식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물출자에서는 출자받은 자산의 시가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³⁰⁾ 현행 법인세법 체계상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에서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록 자산의 평가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물적분할을 하면 인수받은 자산의 시가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세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면, 앞의 예에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

기업회계			
Dr		Cr	
순 자 산	100	자 본 금	80
		주식발행초과금	30

이와 같은 사례에서 세무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의 차이가 생긴다. 첫째,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그 자체로 익금 또는 손금산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순자산가액을 적게 계상하더라도 익금 또는 손금에 대한 별다른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장부가액은 시가로 계상된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사례에서 자산을 120원에 양도하였다면 기업회계상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20원에서 장부가액 100원을 차감한 20원이거나 세무회계상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120원에서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 110원을 차감한 10원이므로 그 차액 10원을 양도시점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둘째,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즉,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함

28)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의2호

29) 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30) 법인22601-227, 1986.1.24

으로써 발생하는 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분할평가차익으로 앞의 논의와 같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³¹⁾ 따라서 어떠한 견해를 취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소득은 같다.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을 하면서는 두 번째 견해에 따른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나. 자산조정계정

법 제47조 제2항에서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서는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110원인 순자산을 공정가액으로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액면가액 80원의 주식을 분할법인에게 교부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의 기업회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

분할신설법인의 회계			
Dr		Cr	
순 자 산	110	자 본 금	80
		주식발행초과금	30

여기서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상당액 1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순자산의 취득가액은 100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액 1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하고³²⁾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그러나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고,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세무조정을 하면 순자산가액 1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자산조정계정 1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순자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순자산가액 1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자산조정계정 10원을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순자산 1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자산을 양도하는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31) 세법에서 분할차익을 익금불산입한다는 규정은 상법에 의한 분할차익에 대한 규정으로 과세특례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32) 자산의 과대계상 10원은 주식의 형태로 분할법인에게 지급되었고, 또한 분할법인의 수익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로 처분된다.

장부가액에 의한 분할의 경우를 본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장부가액으로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

분할신설법인의 회계			
Dr		Cr	
순 자 산	100	자 본 금	50
		주식발행초과금	50

분할법인이 자산 양도차익상당액 1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봄으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즉, 별도의 조정이 없더라도 다음에 순자산을 120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모두 2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시행령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면 순자산의 과소계상 1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10원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자산을 양도한 시점에서 각각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자산을 120원에 처분하면 기업회계에서 처분손익이 20원이 되고, 세무회계에서도 양도차익이 20원이 된다.

IV. 사례연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물적분할은 분할되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의해 회계처리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가치에 의한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처리의 가능성도 많다. 첫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시에 처분손익을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처리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처리가 공정가치에 의한 회계처리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대다수 감사인이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둘째, 한국회계기준원은 물적분할의 경우 경제적 실체의 변화는 없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만, 동일지배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고, 현행의 회계기준을 유지한다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원칙을 고려하여 공정가치에 의한 회계처리로 결정함으로써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처리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법은 상장법인 또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회계처리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법인³³⁾에도 같이 적용되므로 일반법인의 자의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과세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회계에서는 양도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지만, 세법에서는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인식한다. 또한, 기업회계에서의 공정가액과 세법에서

33) 영리법인 중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일반법인”이라고 표현한다.

의 시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이 세법과 달리 회계처리를 할 때, 이에 대한 세법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례연구에서는 동일한 사례에 대해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의 상이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과세특례의 선택 여부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한다.

1. 일반적인 경우

사례 1 ...



분할법인은 장부가액이 200원, 공정가치가 500원인 순자산(장부가액 500원, 시가 300원인 자산 A와 장부가액 200원, 시가 700원인 자산 B 및 시가와 장부가액이 500원인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액면가액이 100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전부 분할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분할등기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500원이다. 이 후 특례기간경과 후에³⁴⁾분할법인은 제삼자에게 주식을 500원에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제삼자에게 자산 A를 300원, 자산 B를 700원에 양도하였다.

가. 시가에 의한 물적분할

(1)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³⁵⁾				주식처분시점의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500	자 산 A	500	제 예 금	500	투자주식	500
부 채	500	자 산 B	200				
		처분손익	300				

분할시점에서 자산의 처분손익 300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리고 주식 처분시점에서 압축기장충당금 300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34) 여기서 특례기간은 법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6항에 규정하는 특례기간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35) 분할시점에서 “(차변) 지분법손익 300원 (대변) 투자주식 300원”의 분개는 세무회계에서 지분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려하여 생략하였다. 이하 사례연구에서 모두 같다.

〈표 1〉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이익	과세소득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분할일				압축기장충당금	300	유보	300	0
양도일	압축기장충당금	300	유보				0	300

(나)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자산처분시점의 기업회계			
Dr		Cr		Dr		Cr	
자 산 A	300	부 채	500	제 예 금	500	자 산 A	300
자 산 B	700	자 본 금	100	부 채	500	자 산 B	700
		자본잉여금	400				

① 분할시점

분할신설법인은 자산 A에 대해 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자산조정계정 A를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자산 B에 대해서는 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자산조정계정 B를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자산 양도시점

자산 A를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조정계정 A의 금액 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자산 B를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조정계정 B의 금액 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표 2〉 분할신설법인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이익	과세소득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분할일	자 산B	500	기타	자산조정계정B	500	유보	0	0
	자산조정계정A	200	유보	자 산A	200	기타		
양도일	자산조정계정B	500	유보	자산조정계정A	200	유보	0	300

(2)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주식처분시점의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500	순 자 산	200	제 예 금	500	투자주식	500
		처분손익	300				

기업회계에서의 처분손익이 세무회계에서의 양도차익과 같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분할시점의 과세소득은 300원이 되고 주식을 처분한 시점의 과세소득은 0이 된다.

(나)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자산처분시점의 기업회계			
Dr		Cr		Dr		Cr	
자 산 A	300	부 채	500	제 예 금	500	자 산 A	300
자 산 B	700	자 본 금	100	부 채	500	자 산 B	700
		자본잉여금	400				

분할로 취득한 순자산을 시가로 계상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다. 분할시점 및 순자산 양도시점의 과세소득은 모두 0이 된다.

나. 장부가액에 의한 물적분할

(1)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주식처분일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200	자 산 A	500	제 예 금	500	투자주식	200
부 채	500	자 산 B	200			양도차익	300

분할시점에서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함으로써 과소 계상된 3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압축기장충당금 3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³⁶⁾ 주식 처분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되었던 3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 300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표 3〉 분할법인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분할일	투자주식	300	유보	압축기장충당금	300	유보	0	0
양도일	압축기장충당금	300	유보	투자주식	300	유보	300	300

36) 투자주식 중 자산 양도차익상당액에서 투자주식은 익금에 산입한 300원을 포함한 투자주식의 시가 500원을 의미하므로 500원 중 양도차익 300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나)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자산처분일 기업회계			
Dr		Cr		Dr		Cr	
자 산 A	500	부 채	500	제 예 금	500	자 산 A	500
자 산 B	200	자 본 금	100	부 채	500	자 산 B	200
		자본잉여금	100	처분손실	200	처분이익	500

① 분할시점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순자산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의 취득원가를 시가로 계상하기 위해 자산 A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자산조정 계정 A 2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자산 B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자산조정계정 B 5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자산 양도시점

자산 A 2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조정계정 A 200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B 5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자산조정계정 B 500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표 4〉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분할일	자 산 B	500	유보	자산조정계정B	500	유보	0	0
	자산조정계정A	200	유보	자 산 A	200	유보		
양도일	자산조정계정B	500	유보	자 산 B	500	유보	300	300
	자 산 A	200	유보	자산조정계정A	200	유보		

(2)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주식처분일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200	자 산 A	500	제 예 금	500	투자주식	200
부 채	500	자 산 B	200			양도차익	300

분할시점에서 주식의 가액을 시가인 500원으로 하면 양도차익 300원이 발생하므로 3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주식 처분시점에서 300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 5〉 분할법인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분할일	투자주식	300	유보				0	300
양도일				투자주식	300	유보	300	0

(나)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자산처분일 기업회계			
Dr		Cr		Dr		Cr	
자 산 A	500	부 채	500	제 예 금	500	자 산 A	500
자 산 B	200	자 본 금	100	부 채	500	자 산 B	200
		자본잉여금	100	처분손실	200	처분이익	500

① 분할시점

순자산의 취득원가를 시가로 계상하기 위해 자산 A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분할차손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자산 B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5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분할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② 자산 양도시점

자산 A 2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자산조정계정 A 200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B 5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자산조정계정 B 500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시점에서 순자산의 과소계상 3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지만, 순자산의 익금산입으로 발생한 차익 300원은 분할차익의 성격을 갖고 있어 다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한다. 순자산의 처분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되었던 순자산 300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 6〉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액	처분	과 목	금액	처분		
분할일	자 산 B	500	유보	분할차익	500	기타	0	0
	분할차손	200	기타	자 산 A	200	유보		
양도일	자 산 A	200	유보	자 산 A	500	유보	300	0

다. 소결론

〈표 7〉 일반적인 경우 CASE별 과세소득

구 분		시가에 의한 회계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		
		분할시점	양도시점	합 계	분할시점	양도시점	합 계
특 레	분할법인	0	300	300	0	300	300
	분할신설법인	0	300	300	0	300	300
	합 계	0	600	600	0	600	600
비특레	분할법인	300	0	300	300	0	300
	분할신설법인	0	0	0	0	0	0
	합 계	300	0	300	300	0	300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의 과세체계에서 시가에 의한 회계처리나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처리나 과세소득에 차이는 없다. 즉,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해 조세 중립적이다. 그러나 과세특례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해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가 조세부담이 많아진다. 이러한 원인은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분할신설법인 자산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없게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물적분할이 불가능하다. 또한, 분할되는 순자산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 있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분할되는 순자산 전체로는 손실의 이중공제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별자산별로 보면 내재손실³⁷⁾이 있는 자산은 그 내재손실이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고, 다시 분할신설법인에서 양도차손으로 실현된다. 즉, 같은 내재손실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공제의 원인은 이중과세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데에 있다. 사례1에서 자산 A는 장부가액이 500원이지만 공정가치가 300원으로써 200원의 내재손실을 갖고 있다.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은 자산 A의 양도차손으로 말미암아 200원 감소하였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A를 양도함으로써 200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국 내재손실 200원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서 이중으로 공제된 것이다. 이러한 이중공제는 물적분할 시 내재손실이 포함된 불용자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중으로 공제를 받아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7) 내재손실이라 함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의미한다.

2. 주식의 시가와 순자산의 시가가 다른 경우

사례 2 ...



사례1과 같은 상황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400원이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은 500원이었다.

가. 시가에 의한 물적분할

(1)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주식처분시점의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500	순 자산	200	제 예 금	500	투자주식	500
		처분손익	300				

과다 계상된 투자주식 1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그리고 시가가 500원인 순자산을 양도하고 시가가 400원인 주식을 받았으므로³⁸⁾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1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처분손익 200원³⁹⁾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 양도시점에 유보로 처분된 금액 100원과 압축기장충당금 200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표 8〉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액	처분	과 목	금액	처분		
분할일	부당행위	100	유출	투자주식	100	유보	300	100
				압축기장충당금	200	유보		
양도일	투자주식	100	유보				0	300
	압축기장충당금	200	유보					

38)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인 400원이 주식의 평가액이 된다.

39) 기업회계 상의 처분손익 300원에서 손금에 산입된 100원을 제외한 200원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100원은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은 사례1과 같다.

(2)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주식처분시점의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500	순 자 산	200	제 예 금	500	투자주식	500
		처분손익	300				

시가가 500원인 순자산에 양도하고 시가가 500원인 주식을 받았으므로⁴⁰⁾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나)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은 사례1과 같다.

나. 장부가액에 의한 물적분할

(1)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주식처분일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200	순 자 산	200	제 예 금	500	투자주식	200
						양도차익	300

분할시점에서 주식의 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함으로써 과소계상된 2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압축기장충당금 2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또한, 시가 500원인 순자산을 400원에 양도한 것이 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차액 1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주식 처분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되었던 2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 200원을 익금에 산입한다.

40)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인 500원이 주식의 평가액이다.

〈표 9〉 분할법인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액	처분	과 목	금액	처분		
분할일	투자주식	200	유보	압축기장충당금	200	유보	0	100
	부당행위	100	유출					
양도일	압축기장충당금	200	유보	투자주식	200	유보	300	300

(나)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은 사례1과 같다.

(2)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가)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주식처분일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200	순 자산	200	제 예 금	500	투자주식	200
						양도차익	300

분할시점에서 주식의 가액을 시가인 500원으로 하면 양도차익 300원이 발생하므로 3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주식 처분시점에서 300원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 10〉 분할법인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액	처분	과 목	금액	처분		
분할일	투자주식	300	유보				0	300
양도일				투자주식	300	유보	300	

(나)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은 사례1과 같다.

다. 소결론

물적분할에서 기업회계는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순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인식한다.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와 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의 시

가는 대부분 다르다. 주식의 시가가 순자산의 시가보다 작으면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11>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함에 따라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가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주식시가와 순자산시가의 차액인 100원의 과세소득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주식의 시가가 순자산의 시가보다 크면 양도차익이 적게 계상되지만, 주식취득시점에 익금에 산입되어 유보로 처분된 후 주식양도시점에서 손금에 산입되며, 또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 11> 주식과 순자산의 시가가 다른 경우 CASE별 과세소득

구 분		시가에 의한 회계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		
		분할시점	양도시점	합 계	분할시점	양도시점	합 계
특 례	분할법인	100	300	400	100	300	400
	분할신설법인	0	300	300	0	300	300
	합 계	100	600	700	100	600	700
비특례	분할법인	300	0	300	300	0	300
	분할신설법인	0	0	0	0	0	0
	합 계	300	0	300	300	0	300

3. 과세이연 금액과 자산조정계정 금액의 불일치

사례 3 ...



갑 법인은 장부가액이 200원이고 시가가 800원인 자산과 장부가액과 시가 모두 500원인 부채를 물적분할하여 을 법인을 신설하였다.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액면가액이 100원인 주식을 발행하여 전부 갑 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분할법인은 과세특례를 선택하였으며, 이후 특례기간경과 후에 제삼자에게 주식을 300원에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 역시 제삼자에게 자산 및 부채 모두를 300원에 양도하였다.

(1)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주식처분시점의 기업회계			
Dr		Cr		Dr		Cr	
투자주식	300	자 산	200	제 예 금	300	투자주식	300
부 채	500	양도차익	600				

법 제47조 제1항과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 중에서 물적분할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인 300원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처분 시에는 유보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표 12〉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액	처분	과 목	금액	처분		
분할일				압축기장충당금	300	유보	600	300
양도일	압축기장충당금	300	유보				0	300

(2)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분할시점의 기업회계				자산처분시점의 기업회계			
Dr		Cr		Dr		Cr	
자	산	800	부 채	500	제 예 금	300	자
			자 본 금	100	부 채	500	산
			자본잉여금	200			800

순자산의 과다계상 6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다음에 순자산 600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자산조정계정 6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표 13〉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조정 및 과세소득

귀속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회계 이익	과세 소득
	과 목	금액	처분	과 목	금액	처분		
분할일	순 자 산	600	기타	순 자 산	600	유보	0	0
	순 자 산	600	유보	자산조정계정	600	유보		
양도일	자산조정계정	600	유보				0	600

(3) 소결론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0보다 커서 물적분할의 대상이 되더라도 자산의 재평가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이중과세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이루어진다. 사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과세소득 600원 중에서 300원은 분할법인의 과세이연이라는 혜택도 없이 발생한 소득이다.

V.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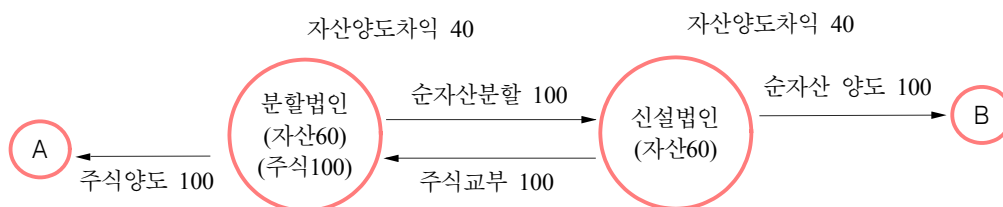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가. 이중과세의 문제

압축기장방식의 과세이연제도는 물적분할이라는 우회적인 양도거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 즉, 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은 자산양도차익이 내재된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만 시가로 양도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조세부담 없이 자산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즉, 미실현이익을 조세부담 없이 실현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분할법인은 자산의 양도에 대해 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상한 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일종의 변형된 압축기장방식에 의한 과세특례제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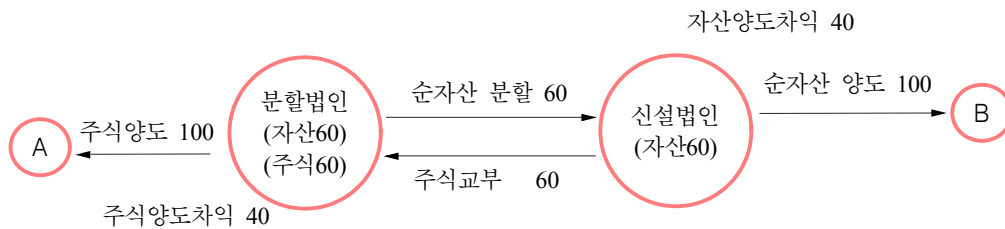
분할법인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상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분할법인의 양도차익과 같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다시 분할신설법인에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장부가액 60원, 시가 100원인 순자산을 시가로 물적분할한 후 분할법인은 주식을 100원에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순자산을 100원에 양도하였다면,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이 40원,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이 40원으로 합계 80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만약, 분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산을 양도하였다면 40원의 양도차익에 대한서만 과세하게 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다시 분할신설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게 된다.

<그림 1> 현행 규정과 과세소득



물적분할의 경우 독일, 미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과세특례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과세이연하고 있다(황남석 2010, 206). 이러한 장부가액승계방식에 따르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한다. 앞의 사례에서 장부가액승계방식으로 과세이연하면 <그림 2>와 같이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림 2> 장부가액승계방식과 과세소득



그러나 장부가액승계방식에 의하면 거래액이 장부가액이며,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양도차익은 양도받은 자산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달라 이중과세의 논란에서 피할 수 있다.⁴¹⁾ 반면에 현행의 과세체계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는 같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분할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다시 분할신설법인 단계에서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와 다르다.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해석상의 논란을 가져온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장부가액승계방식에 의한 과세특례가 된다. 그러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는 압축기장방식의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부가액승계방식에 의한 과세특례는 양도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것이고, 압축기장방식은 양도되는 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것으로 2개의 조문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 전부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사례3에서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이 되지 아니하지만 분할신설법인에서는 그 차액이 다시 과세됨을 알 수 있다. 압축기장방식에 따른 이중과세가 과세특례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세이연이라는 혜택도 없이 이중으로 과세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41) 물적분할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갖고 있는 현물출자에 있어서 이중과세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취득가액 승계를 통한 과세이연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김선영 2009, 159).

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사례2와 같이 주식의 시가와 순자산의 시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할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양도가액은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된다. 따라서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저가양도가 된다. 그런데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와 주식의 시가는 대부분 다르게 된다. 즉,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는 대부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이 되어 순자산의 시가와 다르다.⁴²⁾ 따라서 대부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고, 양도한 자산의 순자산가치와 취득한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대부분 일치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측면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⁴³⁾ 물적분할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한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제적 합리성에 문제가 없고, 나아가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 실질적인 과세소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고 하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의 근본취지는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과세이연을 받음으로써 당장 조세부담 없이 구조조정 또는 조직개편을 할 수 있어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것이다. 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과세이연의 대상이 소멸하므로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그런데 분할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와 이후 3년 내에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일 현재의 시가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42)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고, 기획재정부 재산세 제과-1065(2009.6.15)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므로 대부분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게 된다.

43) 대법원2008.10.9. 선고, 2006두19013 판결 등.

로 계상하고 자산의 양도 시에 익금에 산입하여 이중과세의 부담을 하는 것은 분할법인이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받은 것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의해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지되면 오히려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이중과세의 부담마저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자산조정계정의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분할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앞서의 논의와 같이 자본잉여금으로 익금불산입 될 수 있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라는 독립된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다. 물론,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이 아니고, 분할법인이 소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의 실현 차원에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분할법인에 대한 소득을 다시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한다는 논리가 되어 이중과세의 논란이 생긴다.

사후관리는 과세이연을 받은 분할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분할법인이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이중과세라는 부담을 안게 된 분할신설법인까지 사후관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2. 개선방안

가. 현행 과세체계 내에서의 개선방안

첫째,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중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의 해석에 혼란만 가져올 뿐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할법인이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양도되는 자산의 시가가 각각 달리 평가됨으로써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할법인은 분할시점에서 순자산을 시가에 의해 양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순자산의 시가로 취득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한 분할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것은⁴⁴⁾,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관련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법 제52조와 관련한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에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순자산의 시가로 물적분할 하고 분할대가를 100% 주식으로 받는 경우로서 순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셋째, 법 제47조 제2항에서 분할법인이 과세특례를 선택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할

44) 여기서의 평가방법의 변경은 질의회신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6.15”의 변경을 의미한다. 즉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분할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법인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이 된다. 만약 기업회계에서 시가로 계상하면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후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에 기록되어 관리된다. 자산의 세목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의 부속명세서로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기록하도록 하면 된다.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서 분할 신설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계상하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이나 자산의 처분 시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조정만 복잡하게 할 뿐 과세소득의 계산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의 부속명세서로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기록·관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법 제47조 제3항에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익금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은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분할시점에서 이미 이중과세라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되는 규제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현행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방식으로는 압축기장방식, 자본산입방식, 장부가액 승계방식, 징수유예방식 등이 있다(황남석 2010, 24-27). 독일, 미국, 일본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 승계방식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일단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압축기장방식으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고, 이로 말미암은 조세 회피에 대한 보완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양도법인은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상하고, 양수법인은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게 됨으로써 압축기장방식과 장부가액 승계방식이 혼합된 과세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물적분할을 자산의 양도로 보는 시각에서 본다면 압축기장방식의 과세이연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안고 있는 장부가액 승계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이중과세의 부담을 지우는 현행의 혼합된 과세방식보다는 오히려 순수한 장부가액 승계방식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현행의 과세체계에서 이중과세의 원인인 분할신설법인의 장부가액 승계는 폐지하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로 본다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어야 한다. 즉,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분할시점에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게 만드는 것으로, 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규제에서 조세특례의 직접 당사자인 분할법인에 대한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때 일정기간 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할법인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특례를 이용하여 조세부담 없이 자산을 양도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특례의 선택과 관계없이 시가에 의해 분할하도록 하되, 제3항에서 특례기간 내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그 자산에 대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결 론

법인세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갱생 또는 경쟁력확보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국 국가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제정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09.12.31 법률의 개정과 2010.6.8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논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후 가상의 사례를 통해 회계 선택⁴⁵⁾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에 따른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정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차이의 원인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중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분할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순자산의 시가와 주식의 시가가 다르므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통칙 52-88...3에 “물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이 순자산의 시가로 물적분할하고 분할대가를 100% 주식으로 받는 경우로서 순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바람직하다. 셋째, 분할신설법인의 회계상 순자산의 취득가액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거친 후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자산의 세목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자본금과 적립금조서(을)의 부속명세서로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여도 분할신설법인은 자산양도 시까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 과세이연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삭제하되, 제3항을 분할법인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시가에 의한 분할과 장부가액에 의한 분할의 선택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국세청. 법인 22601 - 227. 1986.1.24.
_____. 법인 - 296. 2010.3.26.
_____.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 264. 2006.2.2.
_____. 서면2팀 - 2385. 2004.11.18.
권기범. 2009. “물적분할”. 서울법학 제17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1 - 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1065. 2009.6.15.
김선영. 2009. “현물출자와 과세이연”.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143 - 164.
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두19013 판결.
서광석. 2010.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고등법원. 2008.10.30. 선고. 2008수8422 판결.
윤병철. 2005. “현물출자와 세법상 논점”. 조세법연구 제6권 제2호 : 7 - 21.
정태범 · 이석준. 2005. “기업분할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고찰”. 회계저널 제15권 회계기준 특별호 : 141 - 164.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32.14.
_____. 질의회신 01 - 149. 2001.11.16.
황남석. 2010.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 Study on Taxation of the Physical Division

Chun–Woong Kim* · Won–Bae Kim**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ases to find the problems in the process and execution of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which is ruling the taxation system about the physical division and investigate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of the accounting selection, the difference between qualified division and nonqualified division, and the problem of tax adjustment and so on and suggest the reformation.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eformatio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he fourth edition, Clause 2, Article 72 of corporate tax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it is desirable that the contents, "In the case of inclusion adding the exclusion of transfer margin, the price like stocks getting as the physical division is the book amount of assets transferred by the divided corporation," should be deleted.

Second, it is desirable that the contents, "In the case of getting the stocks as 100% relevant the cost of the price of net assets of divided corporation from the physical division," should be added.

Third, it is desirabl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cost of net assets in the accounting of the divided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and the book amount of the divided corporation should be recorded the capital and reserve report and managed after the tax adjustment, and if there is the need to separated the assets, it is desirable that the capital and the reserve report should be recorded as progressive schedule and the asset modification account list separated by the assets.

Fourth, following the reason of the divided corporation is relevant the regular requirement, the reserve fund of compressed register is getting the inclusion in gross revenue if at all, it is desirabl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book amount until the asset transfer of the divided corporation.

Fifth, to resolve the current problem of the double taxation keeping the current taxation postponement method, it must be deleted the regulation of Clause 2, Article 47, and the regulation of Article 3 must be reformed the reserve fund of compressed register of the divided corporation.

〈Key words〉 Physical division, Deferred taxation, Assets adjustment accounts, Acquisition cost

* CPTA in Tax corporate GaGyo. Ph.D. Candidate, KyungWon University

** Professor, KyungWon University